

10. 기타 필요한 사항 (Other Required Matters)

10-1. 기관 경고 및 임원 문책 사항

(Warning to Institution and Disciplinary Warning to Officers)

: 해당사항 없음

10-2. 민원 발생 현황 (Occurrence of Civil Complaints)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Other Required Matters)

10-3. 이용자 편람 (Handbook for Users)

이용자편람은 공시 내용 중 일반인에게 생소한 금융전문용어를 알기 쉽게 해설하여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경영공시 작성지침 상의 용어들을 게재한 것입니다. 주요 용어의 종류 및 해설은 아래와 같다.

- 연결대상자회사

손보사가 해당 회계연도말 현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연결대상자회사라고 합니다.

(1)다른 회사에 대한 손보사의 지분율이 50% 초과하는 경우

(2)다른 회사에 대한 손보사의 지분율이 30% 초과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3)손보사와 손보사의 종속회사(종속회사의 종속회사 포함)가 합하여 위의 (1),(2)에 규정된 방법으로 주식을 소유하거나 실질지배력을 보유함으로써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종속회사 : 위의 (1),(2)에서 말하는 “다른 회사”를 “종속회사”라 합니다.

- 비연결자회사

손보사의 지분율이 15% 초과하면서 연결대상이 아닌 다른 회사를 비연결자회사라고 합니다.

- 주주배당률

주주배당률은 납입자본금에 대한 배당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 (Other Required Matters)

○ 주주배당률 = 배당금액 / 납입자본금 × 100

- 주당배당액

주당배당액은 1 주당 배당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래의 산식으로 산출합니다.

○ 주당배당액 : 배당금액/발행주식수

- 배당성향

배당성향은 세후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액의 비율로 아래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배당성향 = 배당금액 / 세후 당기순이익 × 100

(세후 당기순이익은 연결전 일반계정의 세후 당기순이익을 말함)

- 계약자배당전잉여금

계약자배당전잉여금이란 손보사의 회계연도중에 신규발생한 계약자배당금을 제외한 책임준비금(금리차보장배당 등의 소요액과 계약자배당금의 부리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우선 적립한 후의 잔여액을 말하며 계약자배당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차익을 위해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한함.

-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10. 기타 필요한 사항 (Other Required Matters)

-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 또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실대출

부실대출은 총대출중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을 합한 것으로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측정 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1) 고정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현재화되어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고정거래처)에 대한 자산

- 3 월이상 연체대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 “회수의문거래처” 및 “추정손실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해당부분

2) 회수의문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10. 기타 필요한 사항 (Other Required Matters)

- 3 월이상 12 월미만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3) 추정손실은 다음의 1 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미래현금흐름 등을 감안할 때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12 월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중 회수예상가액 초과부분

- 파생금융상품거래

통화, 채권, 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격에 근거하여 그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매매하거나 이로부터 발생하는 장래의 현금흐름을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및 기타 이를 이용하는 거래입니다.

1)장내거래는 거래소가 정하는 방법 및 기준에 따라 행하여지는 파생금융상품거래입니다.

2)장외거래는 장내거래가 아닌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 파생금융상품거래입니다.

3)헷지거래는 기초자산의 손실을 감소 혹은 제거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거래입니다.

4)트레이딩거래는 거래목적이 헷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파생금융상품 거래입니다.

10. 기타 필요한 사항 (Other Required Matters)

- 지급여력비율

지급여력비율이란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를 안정적으로 확보키 위해 보험종목별 위험도 따라 보험계약준비금에 더해 보유하여야 할 자산기준에 대한 순자산 비율을 말하고, 이는 보험회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 100

○ 지급여력금액 : 납입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비상위험준비금 등의 합계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무형자산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이는 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가치를 의미한다. (보험업감독규정 7-1 조에 의해 산출한다.)

○ 지급여력기준금액 :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의 위험보험에 대한 보험료기준 산출액과 보험금기준 산출액 중 큰 금액의 합계액과 장기보험의 책임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 및 미상각신계약비 차감)의 4%의 금액의 합산금액으로 하며, 이는 보험종목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계약준비금에 더해 보유하여야할 자산기준을 의미한다. (보험업감독규정 7-2 조 제 2 항에 의해 산출한다.)

- ROA (Return on Assets)

보험회사의 총자산을 사용하여 이익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보험회사의 이익창출능력으로 자산대비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 ROE (Return on Equity)

10. 기타 필요한 사항 (Other Required Matters)

보험회사에 투자된 자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보험회사의 이익창출능력으로 자기자본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 유동성 비율

유동성 비율은 손보사의 지급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고객의 인출요구에 대한 지급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위험가중자산

위험가중자산이란 보유자산의 신용도(예시: 채권발행기관의 신용도, 차주의 신용도 등) 및 자산의 성격별로 예상 손실액을 추정한 것을 말하며, 총자산중 미상각신계약비 및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하여 감독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산별 위험가중치를 부과하여 산출합니다. 통상적으로 위험가중치는 과거 경험율을 기초로 결정됩니다.